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청구 정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 남용이다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꽃무늬 레이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24일 유효하게 등록된 저작물인 레이스의 저작권자인 원고가 소장에서 현저한 유사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지방법원이 원고가 청구를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함.

사실 관계

- Malibu Textiles, Inc(이하 ‘Malibu’)는 2014년 H&M Hennes & Mauritz, L.P.(이하 ‘H&M’)이 Malibu의 레이스 디자인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Malibu는 꽃, 덩굴, 잎사귀 등이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레이스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 지방법원이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자 Malibu는 첫 번째 항소를 함.
- 이에 대하여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청구를 정정하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만 소송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 각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여 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을 파기함.
 - 제9 순회 항소법원은 Malibu는 자신의 레이스와 H&M의 레이스의 유사

성 주장 및 H&M의 Malibu 레이스에 대한 접근 주장을 추가함으로써 청구를 정정할 수 있다고 봄.

- 이후 Malibu는 자신의 레이스와 H&M의 레이스를 1:1로 비교하는 사진을 추가하는 등 유사성 주장을 보완하였으나 실수로 접근에 대한 주장 보완은 누락함.
- 나중에 Malibu가 새로운 소장에 누락했던 접근 주장을 포함한 수정 부분을 표시한 사본을 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음.
- 그리고 지방법원은 Malibu와 H&M의 레이스 디자인 사이의 유사한 요소들 대부분은 벵골 시계 덩굴 꽃(Bengal Clockvine flower)의 자연적인 모양과 같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이라며 또다시 각하 결정을 함.
- 또한 지방법원은 정정 시도로 인하여 접근 주장 누락의 결함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Malibu가 H&M의 접근을 적절하게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이에 Malibu는 다시 항소를 제기함.

제9 항소 법원의 판단<1>

-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소송 요건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현 단계에서는 사실 관계 주장들(factual allegations)이 구체적일 필요성은 없음.
 - 표면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침해와 관련하여 이치에 맞는 청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함.
- 저작권 침해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Malibu는 저작권이 침해

<1> Malibu Textiles, Inc. v. H&M Hennes & Mauritz, L.P., No. 17-56531 (9th Cir. Apr. 24, 2019)

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유효한, 등록된 저작권자이고 H&M이 Malibu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표현을 무단 이용하였음을 이치에 맞게(plausibly) 주장해야만 함.

- Malibu는 저작물인 레이스의 등록된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이치에 맞게 주장함.
 - Malibu는 독창적인 2차원 저작물인(two-dimensional artworks) 두 종류의 레이스 디자인 1717 및 제작에 사용된 기계의 차이로 인하여 디자인이 약간 변형된 2차 저작물인 1967 레이스의 저작권 등록을 함.
 - Malibu가 저작권자인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이자 두 레이스 디자인 모두에 반영되어 있는 표현의 침해 행위가 있었음.
-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1717 디자인의 이미지, 1967 디자인의 완전한 기타 자료 또는 디자인 등록 자료를 소장에 포함해야할 것은 요구되지 않음.
- H&M이 자신의 저작물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Malibu는 (1) 두 저작물이 현저하게 유사함(strikingly similar)을 입증하거나 (2)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substantially similar)하고 H&M이 Malibu의 저작물에 접근(access)하였었음을 입증하는 사실을 제출해야 함.
- 법원은 외부적 테스트(extrinsic test)와 내부적 테스트(intrinsic test)라는 두 단계의 분석을 통해 문제가 되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또는 현저하게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본안 전 단계에서는 외부적 테스트만을 고려함.
 - 외부적 테스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특정 표현적인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고, 내부적 테스트는 표현의 유사성을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자연적인 꽃의 잎모양, 봉오리, 줄기, 잎사귀, 색상 등을 레이스 패턴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므로 꽃의 모양을 독창적으로 선택하여 배열한 레이스 패턴은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음.

- 법원은 Malibu의 저작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걸러 내고(filter out) 남은 보호되는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정도를 결정함.
-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와 같이 개별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이라 하여도 독창적으로 선택되고 배열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독창적인 선택의 여지가 클수록 저작권이 보다 두텁게(broad) 보호됨.
- 저작권법은 벵갈 시계덩굴 꽃의 자연적인 모양은 보호하지 않지만 꽃의 모양을 레이스 패턴으로 독창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것은 보호함.
- Malibu는 성공적으로 현저한 유사성 및 실질적 유사성 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됨.
 - Malibu와 H&M의 레이스 패턴은 공통적으로 벵갈 시계덩굴 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넘어 거의 동일한 꽃모양, 잎사귀, 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한 동일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음.
 - Malibu는 소장에서 패턴들이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고 요소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주장함.
 - 사진 상으로는 Malibu와 H&M의 레이스는 색상, 망사 모양 등에서 일부 차이점이 보이나, 합리적인 배심원은 이러한 차이점이 오히려 H&M이 의도적으로 베낀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임.
 - 따라서 Malibu는 성공적으로 현저한 유사성을 주장함 것임.
- Malibu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한 H&M이 Malibu의 캘리포니아 소름을 통해 Malibu의 레이스에 접근하였다고 하는 등 H&M의 Malibu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적절하게 주장하였음.
- Malibu의 주장이 어떤 정정에 의해서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이 정정을 허용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결정권의 남용임.

평가

- 이 판결은 원고가 본안 전 단계에서 원고의 청구 정정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결정권의 남용임을 분명히 한 것임.

※ 참고 자료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9/04/24/17-55983.pdf>

<https://www.reuters.com/article/hm-copyright-lawsuit/9th-circuit-revives-lace-pattern-copyright-cases-against-hm-others-idUSL1N22700X>

미국**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목적이 원고의 목적과 동일하여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4.2 사실 관계

- 원고는 콘서트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촬영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대신 콘서트 티켓 또는 음식이나 음료를 대가로 받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임.
-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 2장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위키미디어에 게시함.
- 소규모 언론사인 피고는 자사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 음악가들에 대한 기사에 이 사건 사진 2장을 이용하면서 한 장의 사진에만 원고의 위키미디어상 이용자 이름을 표시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진 2장 중 나머지 한 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위키미디어상 이용자 이름을 추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정이용을 주장하면서 약식재판을 신청함.

법원의 판단

- 2019년 4월 22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음악가들에 대한 기사와 관련하여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 페이지 뷰에 기반한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진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기사에 주의를 끌기 위해 이 사건 사진 전체를 복제함.
 - 원저작물이 단순히 상이한 매체로 재송신되거나 원저작물의 결과적 이용이 애초의 이용과 동일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의 이용이 논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원고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할 것임.
 - 변형성이 클수록 상업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성이 줄어들음. 따라서 약식재판의 단계에서 상업성과 변형성 요소는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사진은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앵글, 프레임, 타이밍과 같은 촬영자의 창조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1> Philpot v. WOS, Inc., 2019 WL 1767208 (W.D. Tex. April 22, 2019)

-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전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저작물의 전체 복제가 반드시 공정이용의 인정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전체 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님. 따라서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이 사건 사진의 전체 복제가 이 사건 사진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임.
-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원고는 상업적 성공을 하지 못한 사진작가로 공중이 이 사건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이 사건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 수익을 얻거나 이 사건 사진을 판매하지 않았음. 또한 원고는 콘서트나 기타 이벤트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고용되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한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는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가 가치 있는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로 인하여 연락을 받은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가 위키미디어에 무료로 제공되었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었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저작자 표시를 적절하게 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음.
 -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이 이 사건 사진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약식판결 단계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이용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실시한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시한 상황에서 향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의 원고의 저작권 남용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원고가 유사한 소송을 이전에도 제기한 상황에서^{<2>} CCL을 통해 저작물을 제공한 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http://business.cch.com/ipld/PhilpotWOS20190422.pdf>(판결문 원문)

<https://blog.ericgoldman.org/archives/2019/04/photographer-sues-for-failure-to-provide-creative-commons-required-attribution-philpot-v-wos.htm>

<http://copyright.nova.edu/creative-commons-license/>

<https://www.thompsoncoburn.com/insights/blogs/in-focus/post/2019-03-01/willie-s-creative-commons-lesson-the-essential-attribution-requirement>

<2> Philpot v. Media Research Ctr. Inc., 2018 WL 339142 (E.D. Va. Jan. 8, 2018). 이번 판결에서와 동일한 원고는 가수들이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CCL의 원저작자 표시 요건 하에서 사진들을 게시한 후 비영리단체인 피고가 낙태반대론을 가진 유명인들에 관한 기사와 상원의원에 출마할 계획을 가진 유명인에 관한 기사에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면 원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자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가수의 정치적 신념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해당 가수가 촬영된 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며 비상업적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외에도 이번 판결에서와 동일한 원고는 자신이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한 사진이 인용문구가 추가되어 비영리단체의 웹 사이트에 게시되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단체는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약식재판을 신청함.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약식재판의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는 변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의 공정이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Philpot v. Altnet Media, Inc., 2018 WL 6267876 (N.D. Cal. Nov. 30, 2018) 참고.

미국**제9항소법원, 기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박형민**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2019년 5월 2일, 미국 제9항소법원은 Media Rights Tech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기존 원고가 제기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특허 침해 주장과 비교하면서 기존에 제기한 소송이 현재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반드시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음.

사실 관계

- 2000년대 초반 Media Rights Tech사의 공동설립자인 Rank Risan은 데이터 전달경로 통제(Controlled Data Pathway, CDP)로 알려진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MRT는 이를 최초의 DRM 기술이라고 주장함. MRT는 이 기술을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탑재하였으며, 관련 특허 역시 보유하고 있었음. MRT는 이 기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였음.
- 2003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미국영화협회(MPA)는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이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입장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이 기술을 탑재할 것을 추천하였음.
- 이에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기술투자를 위해 MRT와 접촉하였으며, 양사는 비밀유지협약(이하 2004 NDA)을 체결하여 이 협약내용에 따라 공유된 기술들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웨어를 역분석하는 것을 금

지하였음. 협약 이후, MRT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CDP 특허에 대한 정보와 워터마크가 포함된 MRT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 주었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를 평가한 뒤 MRT에게 5천만불을 투자하고 회사 주식 51%를 받는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MRT측은 이를 거절하였음.

- 일 년 뒤인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디어 전달경로 보호(Protected Media Pathway, PMP)라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시작하였음. MRT의 것과 마찬가지로, PMP는 DRM 기술임. MR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만의 효과적인 DRM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었으나, MRT가 CDP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기 이전에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2007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즈 Vista를 출시하면서 PMP 소프트웨어를 탑재시켰으며, 다른 제품들에도 탑재시켰음.
- 2013년 4월 25일 MRT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MRT I)하였음. 이 소송에서 MR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MP를 개발하면서 MRT가 제공했던 정보들을 활용하였다고 주장함. 이를 바탕으로 MRT는 PMP 소프트웨어는 4가지의 CDP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2014년 1월 지방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MRT I와 관련된 CDP 특허 중 하나가 무효라고 판결되자^{<1>} 이 사건을 보류시킴.
- 2015년 9월 4일 특허사건을 담당한 연방항소법원은 MRT I에서 쟁점이 된 CDP 특허 중 하나가 무효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음.^{<2>} 이에 2016년 4월 MRT는 MRT I에 대한 재소불가능한 소취하(voluntarily dismissed with prejudice)를 하였음.
- 1년 뒤 제기한 이 소송(MRT II)에서 MR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PMP 소프트웨어에 MRT 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 및 복제물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이며 MR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회하여 DMCA를 위반하였다

<1> 1심 판결 : Media Rights Techs., Inc. v. Capital One Fin. Corp., No. 1:13-cv-00476, (E.D.Va. Dec. 9, 2013)

<2> 2심 판결 : Media Rights Techs., Inc. v. Capital One Fin. Corp., 800 F.3d 1366

고 주장하였음. 또한 MR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역분석하고 복제를 하면서 2004 NDA와 MRT와의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지방법원은 MRT II를 일사부재리(claim preclusion)를 이유로 각하하였음. 지방법원은 MRT I과 MRT II의 핵심 사실이 동일하고, 대부분이 동일한 증거이며, MRT II가 MRT I에서 발생한 권리를 해할 수 있으며, 두 소송 모두 MRT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MRT는 항소하였음.

일사부재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항소법원은 MRT I이 (1) MRT II와 동일한 청구원인 또는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경우, (2) 최종판결에 도달할 경우, 그리고 (3) 동일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일사부재리에 따라 MRT II는 각하된다고 설명함.
- 당사자들은 MRT I이 소취하됨에 따라 기판력이 있다는 사실과 MR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MRT I과 MRT II의 당사자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였음. 하지만, (1) MRT가 MRT I에서의 주장한 것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2) MRT I과 MRT II가 동일한 청구원인 또는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
- 연방항소법원과 다른 법원들의 원칙은 처음의 제기된 소에서 “가장 나중에 제기된 소장(the operative complaint)을 접수한 이후 발생한 주장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음.
- 저작권 침해 주장 분석
 - 법원은 위의 원칙에 따라 2013년 4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과 그 이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별도로 분석하였음.
 - 2013년 4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일사부재리

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공통 핵심 기준(common-nucleus criterion)에 따라 두 소송의 공통적인 핵심 사실을 공유하는지를 판단하였는데, MRT I과 MRT II의 소송을 비교했을 때 MRT I에서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기초사실과 MRT II에서 2013년 4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초사실이 동일하며, 두 소송은 하나로 병합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법원은 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동일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은 두 권리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MR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다만, 2013년 4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MRT I을 제기한 이후에 발생하여 이를 당시에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연방항소법원은 DMCA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MRT I에서의 공통되는 핵심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였음. 또한 계약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DMCA와 동일한 이유로 인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작동된다고 판단하였음.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공통 핵심 기준에 따르면 기존 소송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소송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줌으로써 특허와 저작권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Media Rights Techs., Inc. v. Microsoft Corp., No. 17-16509\(May 2, 2019\)](#)

미국

**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박형욱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제4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이미지 공유 웹사이트인 Fliker에 업로드한 스톡 이미지 사진을 피고가 영화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일부를 이용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용은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에 근거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공정이용 요소 어느 것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사실 관계

- 상업적 사진작가“Russell Brammer” (이하 “원고”라함)는 스톡 이미지^{<1>}들을 라이선스 해왔으며 2011년 11월 19일 워싱턴 DC 옥상에서 사진 "Adams Morgan at Night"(이하 “사진”이라함)를 촬영함. 채도가 적용된 색상의 사진은 아담스 모건 지역의 저녁 시간대의 차량 교통량을 빨간색과 흰색 빛의 흔적으로 렌더링하며 묘사하고 있음.
- 원고는 사진의 디지털사본을 자신의 웹사이트와 이미지 공유 웹사이트인 Fliker에 “© All rights reserved”문구와 함께 업로드 하고 2016년 9월에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등록 신청을 하여 2017년 7월에 저작권등록을 완료함.

<1> 스톡 이미지들은 "잡지, 웹 사이트 또는 브로셔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설명 또는 미적 목적으로 라이선스 된다. Eric E. Johnson, The Economics and Sociality of Sha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94 B.U.L. Rev. 1935, 1962 (2014). 참조.

- 영화제작사 Violent Hues Productions, LLC의 소유주인 “Fernando Mico”(이하 “피고”라함)는 2014년 “Northern Virginia International Film and Music Festival”를 홍보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였고, 2016년에 워싱턴 DC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Plan Your Visit”페이지에 원고의 사진을 잘라 “Adams Morgan, DC”라는 캡션을 달아 저작권자표시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함.

사건경과

-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2월 피고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사진을 제거할 것과 이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냄. 이에 피고는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내렸으나 보상은 하지 않음.
- 원고는 2017년 9월 10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변호사비용을 구하는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함.^{<2>}
- 피고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하여 Fliker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원고 사진을 발견하였으며, 어떤 저작권보호 표시도 보지 못하였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로 생각하여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원고 사진의 여백(negative space)을 잘라 이용한 것은 스타일을 위한 이유에서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저작권법 제107조 이하에 근거한 공정이용 항변을 주장하며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신청함.
- 2018년 6월 11일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은 ① 정보전달이 목적이며 제품광고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닌 변형적이며 비상업적인 이용이며 선의(good faith)의 이용임 ② 원고 사진의 창작적 요소는 장소의 사실적 묘사에 불과하며 피고는 원고 사진의 사실적 부분만 이용함 ③ 피

<2>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1:17-cv-01009 (E.D. Va. 2017).

고가 원고사진의 반의 양을 잘라 이용한 것은 사실적 내용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을 이용한 것이 아님 ④ 피고의 사진 이용은 원고 사진의 잠재적 시장에 어떤 불리한 영향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사진이 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함.^{<3>}

- 원고는 2018년 7월 9일에 항소하고 제4순회항소법원(이하 “법원”이라함)은 2019년 4월 26일 피고의 사진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4>}

법적쟁점 및 법원판단

- 법원은 저작권법 목적의 관점에서 공정이용 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5>}고 판단하며,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공정이용의 요소들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요구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관하여 원고 사진과 피고의 사진을 일대일 비교한 후 피고의 사진은 원고의 사진의 여백을 잘라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어떤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만들지 않는 최소한의 변경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 사진이 두터운 저작권보호를 받는지 원고 사진의 빛, 카메라 각도, 피사체의 심도, 전경과 배경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창작성을 판단

<3> Russell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1:17-cv-01009 (E.D. Va. 2018). ; 유현우 “법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0호. 참조.

<4> Russell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0:18-cv.co-01763 (4th Cir, Apr 26, 2019).

<5>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8, 114 S.Ct. 1164, 127 L.Ed.2d 500 (1994).

함. 법원은 원고가 옥상의 장소를 정하여 수많은 셔터속도와 조리개 조합 실험을 하는 창작적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 사진은 선명한 색상과 조감도 스타일을 이용하고 차량의 교통량을 빛의 줄무늬로 표현함으로써 이미지를 스타일화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사진의 이러한 창작성은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은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2차적 이용자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 이상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라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부분을 이용하였으며 원고 사진의 배경만을 잘라 거의 반에 해당하는 양의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세 번째 요소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동산업자가 웹사이트에 아담스 모건을 표현하기 위한 스톡이미지로 1,250달러의 이용료를 원고에게 지불하고 사진을 이용한 경우의 증거를 인정하며, 피고의 행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싱 시장과 전문적인 사진 작업이 광범위하게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 이후에 원고의 사진판매가 두 건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배척하며, 네 번째 요소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결론적으로 공정이용 판단요소 어느 것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함.

평가 및 전망

- 제4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이후 사진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의 많은 비난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미국저작권법의 근본 목적과 제

107조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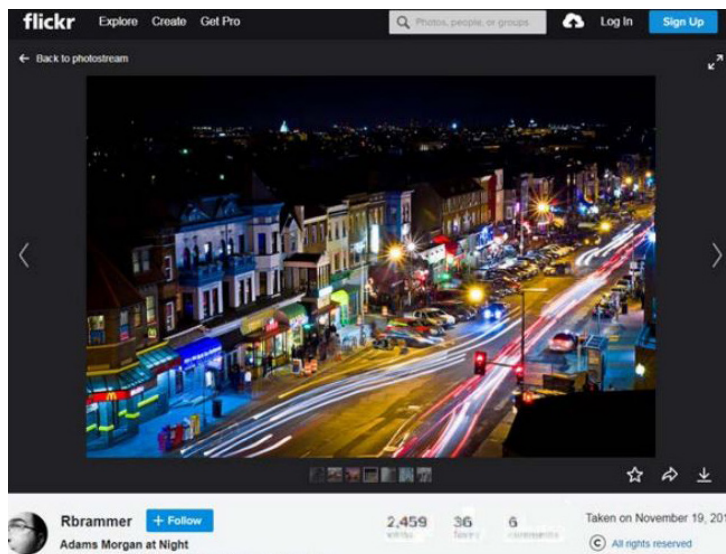
- 인스타그램, 트위터, 플리커와 같은 공유의 성격을 가지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에 올라온 스톡이미지의 경우 라이선싱을 위한 저작권 보호 대상의 이미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단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고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은 주의해야함.

※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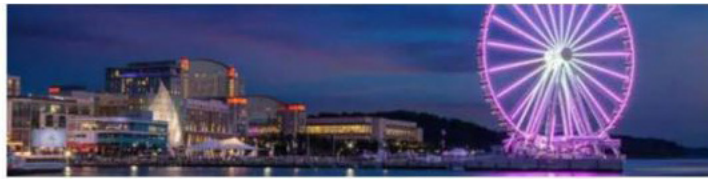
<http://www.dailyreportingsuite.com/ip/news/IPLD20190429>

<https://fairuse.stanford.edu/case/brammer-v-violent-hues-productions-llc/>

<https://www.pixsy.com/pixsy-legal-partners-win-landmark-appeal/>



[원고의 사진저작물]



National Harbor, MD



Adams Morgan, DC



[피고의 침해물]

[Image source: Russell Brammer v. Violent Hues Productions, LLC,
case no. 0:18-cv.co-01763 (4th Cir, Apr 26,2019)]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발표함

허원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미국 저작권청은 2019년 4월 23일에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배경

- 1990년 이전에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주를 이루었음.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저작물과 관련하여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왜곡, 손상, 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1>}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1988년에 베른협약집행법(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을 입법하고 1989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함. 당시 미국은 국내 10여개 주에서 받아들인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률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입법하지 않았음.

<1>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가법령정보 조약 제1349호

- 미국은 시각 예술 저작자들의 요청에 따라 1990년에 시각예술가 보호법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을 입법함. VARA에서 시각 예술저작물(a work of visual art)에만 부분적으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과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인정하고 있음. 이후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A에 VARA의 규정이 도입되었음.
- 미국 저작권청은 2015년에 의회 하원 사법위원회에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구를 권고하였고, 2017년부터 저작인격권에 대한 공중 의견 수렴을 시작함.

내용

- 2019년 4월 23일 미국 저작권청은 그간 수집한 공중 의견 수렴 및 연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2>}를 발표함.
-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1장은 본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역사, 2장은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구를 설명함.
 - 3장은 저작인격권 체제의 연구를 위한 기본 원칙, 4장은 논의사항과 결과를 설명함.
- 연구의 주된 주제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rights of attribution, (the right to be credited as the author of one’s work)과 동일성유지권 (rights of integrity, the right to prevent prejudicial distortions of one’s work)임.
- 저작권청은 본 연구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움.
 - 첫째, 미국 저작인격권 체계에 대한 변화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2> Authors, Attribution, and Integrity: Examining Mor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2019

Amendment),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및 제한된 저작권 규정들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함.

- 둘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셋째, 미국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대한 연구는 창조적인 산업과 저작물 제작의 범주 사이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한 가지 방식의 저작인격권 보호는 만능이 될 수 없음.
-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연방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도입할 필요는 없고, 현재의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베른협약에 가입할 당시의 의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해야만 하는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다 함.
- 보고서에서 저작권법 1202조에 대한 개정을 제안함. 침해(infringe) 대신 저작자의 성명을 은닉(conceal)하려는 고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개정 제안된 저작권법 1202호A에 근거하여 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함.
 - 디지털 사진에서 저작자의 메타데이터가 고의적으로 제거되거나 타인의 메타데이터로 대체되는 경우
 - 인쇄된 도서의 표지를 제거하는 행위 및 다른 저작자의 이름을 기재한 표지로의 대체 행위
 - 그림에 있어서 저작자의 서명을 제거하는 행위
- 각 주별로 산재해있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평가

-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미국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적어보임. 다만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각 주별 저작

권법이나 현재의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www.copyright.gov/policy/moralrights/>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임베딩(삽입)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제청함.

사실 관계

- 원고는 프로이센 문화재단이며 독일 디지털 도서관(DDB)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독일 미술 저작물 관련 저작권관리단체(VG Bild-Kunst)임.
- 원고는 문화 및 학술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 이 플랫폼은 독일의 문화 및 학술기관을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하고 있음. 원고의 도서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들 문화 및 학술기관의 웹포털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링크를 통하여 호출될 수 있음. 이들 디지털 콘텐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원고의 도서관은 문화 및 학술기관의 웹포털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썸네일(Vorschaubilder, thumbnail)을 저장하여 검색창에서 클릭하면 프레임 방식으로 별도의 창에서 노출시키려고 함. 이러한 썸네일 콘텐츠 중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예술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는 썸네일 형태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함.

- 피고는 계약대상인 저작물과 보호대상이 제삼자의 프레이밍으로부터 보호 되도록 원고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함.
- 원고는 이러한 계약조건을 거부하고 피고가 이러한 조건 없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섬네일을 제삼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으로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왜냐하면 저작권관리단체법(VGG)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조건’으로 저작권관리단체는 이용을 허락할 의무가 있지만(제34조 제1항의 계약강제),^{<1>} 제3자의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는 상당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조건’에 해당되어 정당하고 제삼자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 허락 없이 프레임 방식으로 삽입하는 것(임베딩)은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접근시키는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1심 법원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1> 저작권관리단체법(VGG) 제34조 제1항 : 관리단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요구에 따라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의하여 상당한 조건으로 이용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용에 동의해 줄 의무가 있다. 이 조건은 특히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상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한다.

문제는 민사법원이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

항소심 법원 판결

- 베를린 고등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요청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3>}
- 저작권관리단체법 제34조 제1항의 계약강제는 보상의 적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남용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단체와 라이선스 요구자 사이에 이 법의 목적과 계약강제의 목적 사이에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함.
-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프레이밍을 공중전달로 보고 저작재산 권의 이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왜냐하면 원고의 웹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섬네일은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더라도 계속 노출될 수 있어서 자유로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임.
- 연방대법원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로 모든 인터넷이용자에게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서 임베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공중전달이 아니 라고 판결함.^{<4>}
-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원고의 프레이밍이 공중전달이 아니라면 제삼자의 프 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원고의 보호조치를 우회한 제삼자의 프레이밍도 공 중전달로 인정할 수 없음.^{<5>}

<2> LG Berlin, Urteil vom 25.07.2017 - 15 O 251/16.

<3> KG Berlin, Urteil vom 18.06.2018 - 24 U 146/17.

<4> BGH, Urteil vom 9.7.2015 - I ZR 46/12.

<5>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참조.

연방대법원의 선결 판결 제청

- 연방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이 사안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절차를 중지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제청함.^{<6>}
 -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위탁을 받은 자가 행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임베딩되는 것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고는 저작권관리단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관리단체로서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근거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건으로 어느 누구에 대하여 이용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대해서 피고는 또한 이용권 허락 시 자신과 관련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집행할 의무도 있음. 따라서 피고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제삼자의 프레이밍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음.
-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모든 인터넷이용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섬네일을 이러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임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임베딩하는 것이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
-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으로 이행된 정보사회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권이 침해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이 요구됨.

<6> BGH, Beschluss vom 25. April 2019 - I ZR 113/18.

평가 및 전망

- 이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작권관리단체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제삼자의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로 요청할 수 있다면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한 프레이밍은 공중전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BestWater 결정^{<7>}에서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프레이밍 방식으로 다른 웹사이트에 임베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 다른 특별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한, 공중전달이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제삼자로부터 프레이밍되지 않도록 방지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이밍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공중전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됨.

※ 참고 자료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Datum=Aktuell&nr=94899&linked=pm>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gh-beschluss-izr11318-vorlage-eugh-framing-technische-schutzmassnahmen-framing/>

<https://heise.de/-4408490>

<7> CJEU, 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저작권 동향 2014년 제22호 참조). 이 ‘결정’(‘판결’이 아님)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의 임베딩을 다루고 있음.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오사카고등법원은 조합의 사업 활동 홍보 등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다 투입된 사건에서 조합이 기획하고 그 책임 아래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그 저작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판단함.

④ 사실관계

- 항소인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주식회사이며, 피항소인 회사는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하는 주식회사임.
- 피항소인 P1은 2015년 4월 27일까지 피항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항소인 P2는 접착테이프 판매업 및 인쇄업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였음.
- 피항소인 P1은 피항소인 회사 창립 100주년 기념 파티를 위한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항소인의 대표자인 P3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공동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피항소인 P2가 합류하였음.
- 항소인의 대표자인 P3, 피항소인 P1 및 P2는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8월 6일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음.
- 조합 설립 후 P3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조합 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해 피항소인들에게 교부하였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제9판 DVD까지 피항소인들에게 교부하였음.

- 피항소인들은 2009년 8월경부터 2016년 10월 15일까지 피항소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중송신을 함.
 - 이 사건 조합은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홍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웹 사이트를 제작할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피항소인 회사의 사이트를 활용하였음.
- 항소인은 피항소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영상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영상의 복제·사용 금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등을 구함.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귀속
 - 항소인은 자신이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항소인들은 이 사건 영상은 영화 저작물이며, 그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1>}는 이 사건 조합임을 지적함.
 - 저작자인 항소인 대표자 P3은 영화 제작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이 사건 영상 중 제3판 ~ 제9판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당 영화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일본 저작권법 규정^{<2>}에 따라 7편의 저작권은 영화 제작자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한다고 주장함.
 -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각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함.

<1>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영화 저작물의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를 영화 제작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일본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가 영화 제작자에게 영화 저작물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때는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이 영화 제작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양도 유무
 - 피항소인들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항소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인이 피항소인 P1에게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항소인은 피항소인들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을 뿐, 피항소인 P1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또한 항소인은 이 사건 영상의 촬영 기간이나 제작비용을 생각하면, 자신이 피항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양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함.
- 이 사건 영상의 사용 허락 유무
 - 피항소인들은 항소인이 조합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한 것, 웹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에 관한 회의 의사록 등을 근거로 항소인이 이 사건 영상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판단
 - P1, P2, P3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은 그 사업 활동 홍보 등을 위해 이 사건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그것을 P3에 의뢰하였음.
 - 이 사건 영상을 기록한 DVD는 그 내용상 영화 저작물로 인정되며, 그 중 제5판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의 명칭이 DVD 표면 및 기록된 영상에 표시되어 있음.
 - 이를 보면, 적어도 제5판 이후 영상은 이 사건 조합이 기획하고 그 책임 아래 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고, P3은 저작자로서 그 제작에 참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영상 중 제5판 이후 영상의 저작권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해야 함.
- 또한 제1판 ~ 제4판 영상은 장래 이 사건 조합의 사업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습작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 성립 전에는 저작자인 P3 또는 항소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성립 후에는 제5판 이후 영상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함.
- 즉, 제1판 ~ 제4판 영상에 관한 저작권도 이 사건 조합 성립에 따라 그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판단
 - 피항소인들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양도를 주장하지만, 항소인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영상의 사용 허락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항소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① 제5판 이후 영상에 이 사건 조합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사용 형태, ② 이 사건 조합과 P1, P2, P3의 관계, ③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한 시기<3> 등을 생각하면,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이 사건 영상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봄이 상당함.
- 이상을 바탕으로 오사카고등법원은 2019년 3월 14일 항소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함.

※ 참고 자료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57>

<3> 항소인은 웹 사이트에 이 사건 영상이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2016년 2월까지 피항소인 회사에 대해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하지 않았음.

중국

불법 공유로 인한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연간 60억 위안에 달해

백지연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2018년 불법 공유로 인한 중국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60억 위안으로 달함. 이는 현재 시장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피해 작가 수는 14,000만 명이며 피해 저작물 수는 35,569 권으로 집계됨. 불법 공유가 성행하는 이유로는 상부상조하는 이익 구조와 증거 수집과 권익 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중국 인터넷 문학 업계의 불법 공유 현황

- 전문 컨설팅 업체인 아이루이(艾瑞咨询)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2018년 불법 공유로 인한 중국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58억 3000만 위안(한화 약 1조 25억 원)에 달함. 이는 현재 시장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피해 작가 수는 14,000만 명이며 피해 저작물 수는 35,569권으로 집계됨.
- 손실액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취거(笔趣阁)”^{<1>}와 같은 불법 웹소설 플랫폼이 있음. 비록 “비취거”는 사법당국의 행정조치로 폐쇄되었으나 비슷한 형태의 불법 웹소설 플랫폼이 성행하고 있음. 인터넷 문학 업계의 가장 큰 플랫폼인 위에윈그룹(阅文集团)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해 작가들을 도와 100건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1>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던 중국의 대표적인 불법 웹소설 플랫폼.

- 불법 웹소설 플랫폼을 통한 불법 공유 이외에도 업계의 불법 공유 형태는 매우 다양함. 검색 엔진을 통한 공유, 블로그, 웹하드, 웹 스토어와 같은 형태의 불법 공유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 최근의 추세로는 1인 미디어 및 H5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불법 공유가 증가하는 원인

- 첫번째 원인으로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음. 중소형 불법 웹소설 플랫폼과 광고주가 연대를 형성해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쉽지 않음. 또한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 비용은 음악 혹은 동영상에 비해 낮다는 특징이 있음. 문학 저작물은 저장 매체 내 차지하는 공간이 적으며 서버를 확장해야 하는 부담 또한 없고 전송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두번째 원인으로서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이 있음. 불법 공유 조직은 주로 트랜스 코딩을 이용한 플랫폼 어플을 이용하며 주요 인원과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의 검열과 조사를 피하고 있음. 중국의 인터넷 문학 업계의 이익 구조는 사슬 형태도 되어 있음. 불법 공유 조직 역시 사이트 설립, 소프트웨어 판매, 광고 수입, 마케팅, 투자 회수 등이 하나의 체인의 형태를 띄고 있음. 각각의 인원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세번째 원인으로서는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있음.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절차가 복잡하며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 작가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비록 최근 법원에서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손해배상액을 높게 판시하려는 동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액이 소송과정의 비용 및 저작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임.

향후 전망

- 2016년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책임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음. 국가 판권국의 이 문건은 중국의 인터넷 문학 업계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건 내 명시된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불법 공유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함. 또한 “블랙 리스트”에 포함된 플랫폼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해 불법 웹 소셜 플랫폼들의 이익의 근원을 차단해야 함.
 - “블랙 리스트 제도”란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 발생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들의 명단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임.

※ 참고 자료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905/1935828.html>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김지영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최근 싱가포르 법원은 구매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에 대하여 벌금 1,200 싱가포르 달러를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음.

배경

- 피고 압둘 나지브 압둘 아지즈(Abdul Nagib Abdul Aziz)는 지역 소매점 안나홀(An-Nahl)의 대표 이사로 한 개의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와 12개의 장치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비치해둔 혐의로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36조^{<1>} 제3A항에 의거하여 기소되었음.
 -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폭스, 스타 스포츠, 아스트로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을 제한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임.

<1>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36조는 벌칙 규정으로 고의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의 정도가 명백하거나 또는 침해 행위가 영리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초범의 경우 2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그리고 재범 또는 그 이상일 경우 5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기존의 불법 셋톱박스들이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프로그램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

싱가포르에서 TV 스트리밍 장치의 불법성

- 싱가포르에서 안드로이드 TV 박스와 같은 스트리밍 장치는 합법적인 콘텐츠에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지만 유료 TV 운영자의 신호를 복호화 하는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게 됨.
 - 과거 대부분의 셋톱박스는 유료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신호를 복호화하여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이러한 장치들을 판매하고 배포하는 것은 싱가포르 방송법상 금지되어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셋톱박스는 어플리케이션을 탑재 및 이용하여 복호화 기술 장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2018년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싱가포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스트리밍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셋톱박스에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음.
 - 본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법 스트리밍을 접근을 차단하도록 함과 동시에 셋톱박스 판매자들에게도 처벌을 내려 싱가포르에서 불법 셋톱박스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임.

피고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의 또 다른 피고 지아 샤오펑(Jia Xiaofeng)을 지목하였음.

- 피고는 지아 샤오펑의 지시에 따라 안드로이드 TV 박스를 판매하였으며, 지아 샤오펑은 이 장치가 판매될 때 마다 20 싱가포르 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하겠다고 하였음.
- 피고는 지아 샤오펑에게 안드로이드 TV 박스에 대한 불법성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아 샤오펑은 이 장치들은 아스트로 말레이시아(Astro Malaysia)에 의하여 라이선스 받은 것들이며,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유튜브와 비슷한 장치로 설명하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스트로 말레이시아에 직접적으로 매 년 구독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법원에 1,000 싱가포르 달러에서 2,000 싱가포르 달러 사이의 벌금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반면에 피고 변호사는 400 싱가포르 달러에서 8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리적 이익을 얻었기에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1,2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의의 및 전망

- 아직 또 다른 피고 지아 샤오펑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지만, 본 사건은 싱가포르 저작권 관련 사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임. 법원은 이때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접근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TV 박스의 판매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
- 그러나 본 사건을 통하여 싱가포르 법원은 셋톱박스에 방송 신호를 복호화하는 디코더를 탑재하지 않고 단지 어플리케이션만 탑재하여 스트리밍 방식

으로 이용자들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장치의 판매자는 저작권법 침해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하였음.

- 또한 이 사건은 2018년 싱가포르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셋톱박스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음.
 - 싱가포르는 14%의 국민이 불법적인 셋톱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그렇기에 싱가포르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여짐.^{<1>}
- 아직 이 사건 장치를 팔아달라고 의뢰한 피고2 지아 샤오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android-tv-box-seller-fined-in-landmark-copyright-infringement-11473652>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android-tv-box-sellers-charged-with-copyright-infringement-9855878>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faqs-tv-streaming-devices-are-they-legal-in-singapore-9216202?cid=h3_referral_inarticlelinks_24082018_cn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almost-4-in-10-singaporeans-actively-streaming-content-illegally-9207726>

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이동규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TV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재생 시간에 비례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ECAD^{<1>}의 자체 기준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ECAD의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저작자와의 계약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연방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되는 저작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브라질 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ECAD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비례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자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소속 저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 옴.
- 이 기준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의 배경음악 등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재생된 음악저작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의 지급 기준이 책정되어 있어,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은 ECAD를 상대로 재생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1> 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Distribuição (Central Office for Collection and distribution)는 법률 제5,988/73에 의거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비영리 사립기관으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관련 권리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당해 소송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지방법원은 연방헌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CAD의 자체적인 지급 기준이 저작자의 권리를 저해하는 차별적 대우 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처벌을 부과함.
- 이에 ECAD는 특정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쓰인 음악저작물의 재생시간은 몇 초에 불과해 프로그램의 오프닝 등에서 1, 2분간 사용된 음악저작물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차등화 된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지를 묻는 특별항소^{<2>}를 제기함.

대법원의 판단

- 사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대법원 제4부의 재판부는 2018년 12월 6일 최종 공판에서 TV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ECAD의 행위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판시하면서 원심의 결정을 뒤집음.
- 재판부는 이용 형태에 따라 차등화를 둔 ECAD의 지급 기준이 연방헌법이나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 유형에 따른 가치 분배에 있어 차등화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ECAD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소속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상액의 기준을 책정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함.
 - 사적 이익을 대표하고 관리하는 ECAD의 내부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판례와 더불어, ECAD는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필

<2> 특별항소(Recurso Especial)는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보장되는 절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항소와 유사하나, 구체적 권리의 오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정의의 교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적인 단체이며(제97조), 저작권의 수집과 가치 배분의 중앙기구인 총회의 결정에 따라(제99조),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제98조) 저작권법의 해당 조문을 해석함.

- 그러면서 재판부는 브라질의 TV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보상은 방송사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권리가 있는 저작자가 소속된 특정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된 저작권료를 단체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저작자에게 재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름이라고 함.
 - 사적 관계의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법에서 규정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사적 관계에 따른 ECAD의 기준을 처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힘.
- 결론적으로 현행법이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차등화 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 소속 저작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ECAD가 사적 계약에 의해 자체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저작권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수집 및 배포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판단함.

평가 및 전망

- 자체적인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보다 확장시킨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브라질 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단체인 ECAD에 유리한 판결들이 대두되고 있어, 저작권 수집 및 배포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흐름은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보다 자율적인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상응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송사가

시작된 당해 판결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2015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으로 이해됨.

- 저작권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존재했던 음악저작물 관련 단체인 ECAD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여타 저작물에 대한 집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문화부는 배우, 감독 및 영화 작가들을 대표하는 영화저작물 관련 단체의 설립을 허가함.

※ 참고 자료

<https://ww2.stj.jus.br/processo/pesquisa/?aplicacao=processos.ea&tipoPesquisa=tipoPesquisaGenerica&termo=REsp%201552227> (판결문)

http://www.stj.jus.br/sites/STJ/default/pt_BR/Comunica%C3%A7%C3%A3o/noticias/Not%C3%ADcias/Ecad-pode-fixar-crit%C3%A9rios-diferenciados-de-distribui%C3%A7%C3%A3o-de-direitos-autorais-conforme-uso-das-m%C3%BAsicas-na-TV